2026년도

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및 이행방안

2026.11.23



한국에너지공단
KOREA ENERGY AGENCY

목 차

1. 제도개요 및 관련 규정 ··· 3

2. 의무대상 ··· 7

3. 설치의무량 산정 ··· 8

4. 면제대상 ··· 9

5. 이행개요 ··· 10

6. 이행절차 ··· 12

7. FAQ ··· 18

✔ 국가, 지방정부,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「재생에너지법」 개정(2025.5)

✔ 시행령 및 기후부 고시 개정 완료(2025.11)

-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대상, 설치 확인절차 등 조항(제18조의14~18)을 신설하고, 고시* 개정으로 의무이행 확인, 설치 기준, 설치계획서 제출 및 검토기준,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을 명시

  *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
- 설치계획서 접수 및 확인 등 실행절차 마련을 위한 운영규칙(지침)을 개정('26.1.23.)하고, 실무를 위한 시스템 오픈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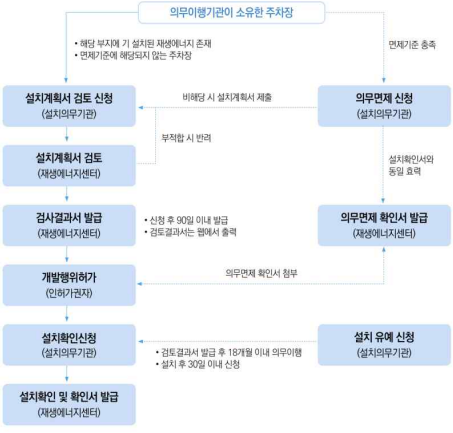




[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]

구분	개정 내용
① 의무 대상 기관	• 현행 공공기관 재생e 설치의무화 제도* 기준과 동일 * 신·증·개축하는 공공 건축물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('04~)
② 의무 대상 주차장	• 주차구획 면적 1,000m²(일반 주차구획 수 80면) 이상 주차장 ※ (의무 대상 제외) 교통안전 저해 우려, 민간 소유 부지에 설치·운영, 임시 주차장 등 설치면제가 타당한 경우 의무대상 제외(평가위원회 심의 필요)
③ 의무 설치용량	• 주차구획 10m²당 1k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필요 ※ (**설치 면적 제외**) 지하식, 기계식, 화물차 주차구획 등 재생e설비 설치가 어렵거나,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를 통해 기설치한 주차장은 의무 용량 산정 시 제외
④ 의무 이행방식	• **직접 설치 또는 재생e 설치 목적의 주차장 부지 임대** * 주차장 내 **既** 설치 용량은 의무이행 인정 • **설치가능 장소 : 주차구획 면적 + 그 외 면적(부대시설, 통로 등)**
⑤ 설비설치 기간	• 설치계획 적합 통보 이후 **18개월 이내 설치 완료 必** * 「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」상 태양광 준비기간 기준 반영 ※ (**기간연장**) 계통·수용성 확보 등 사유로 **18개월 이내 연장** 可 *계통연계 지연 등의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통해 **연장 가능**

주차장 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운영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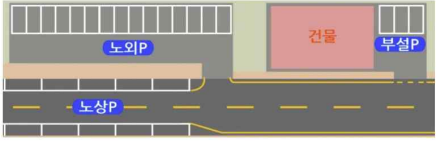
✓ '26년 주차장 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대상 기관에 사전컨설팅 추진, 기설 주차장 대상 참여 활성화 계획

- **사전컨설팅**: 대규모 주차장 또는 다수 주차장 보유 기관 대상 설치의무화제도 사전컨설팅 추진
- **설치계획서 제출**: 법 시행 이전 승인 받거나 운영중인 기설 주차장 대상 설치계획서 제출 완료(시행일 ~ '26.11.28)
- **면제대상**
  -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차장
  - 국가 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
  - 도로 및 교통광장에 설치되거나 보행로 인접 등 교통안전 저해 등 우려가 있는 주차장
  -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설비 이용이 어려운 주차장

[참고-용어 정리]

구 분	정 의
자주식주차장	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
기계식주차장	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
기계식주차장치	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
노상주차장	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노외주차장	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건축물식주차장	건물 내부에 내부에 설치된 자주식·기계식 주차장
부설주차장	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✓ 주차장 구조



✓ 건축물식 주차장



✓ 부설주차장



구분		법률	시행령	고시	지침
		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	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	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	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
관련규정		제12조의13	제18조의14~18, 제30조	제55조~제59조	-
의무대상	기관	제12조의13제1항 (의무기관 기준)	제18조의16 (출자/출연기관 상세기준)	-	-
	주차장	제12조의13제1항 (위임)	제18조의14 (주차구획면적 1,000㎡ 이상 주차장)	제58조제1항 (의무 면제 주차장 기준)	의무면제 기준 구체화
의무량		제12조의13제2항 (위임)	제18조의15제1항 (유효면적 10㎡당 1kW 이상)	제56조제1항 (의무량 산정 제외 기준)	의무량 산정 제외 기준 구체화
기설치 인정			제18조의15제2항 (의무대상주차장 內 타 의무 및 자발 설치용량)	-	-
운영기관			제30조제3항제3호~5호 (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위탁)	-	-
운영절차	면제		-	제58조의제2항~제4항 (면제절차)	의무면제 기준 구체화
	설치계획		제18조의17 (제출기한)	제57조(제출기한) 제59조(검토기준)	설치계획 검토 기준 및 절차 구체화
	연장		-	제56조제3항 (의무이행 기한 연장)	의무이행 기한 연장 기준 구체화
	설치확인		제18조의18 (재생에너지 설치 방식 및 설치기한)	제56조제2항 (설치기한)	설치확인 검토 기준 및 절차 구체화

설치 의무기관

☑ (대상기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, 정부출자기업체, 공공출자법인, 특별법에 따른 법인으로 규정

[설치 의무기관 기준]

구 분	대상기관
1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2	공공기관
3	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4	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5	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 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6	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의무대상 주차장

☑ (대상기준) 총 주차구획 면적*이 1,000m² 이상인 주차장

* 주차구획 면적은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(주차장법 제2조제8호)를 의미하며 주 출입로,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한 자동차가 주차 가능한 구획의 총 면적

※ (주차단위구획)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

[주차단위구획 기준]

구 분	너 비	길 이
경형	2.0m 이상	3.6m 이상
일반형	2.5m 이상	5.0m 이상
확장형	2.6m 이상	5.2m 이상
장애인전용	3.3m 이상	5.0m 이상
이륜자동차 전용	1.0m 이상	2.3m 이상

[일반건축물대장]

※주차장				
구분	옥내	옥외	인근	면제
자주식	대 ㎡	대 ㎡	대 ㎡	대
기계식	대 ㎡	대 ㎡	대 ㎡	
전기차	대 ㎡	대 ㎡	대 ㎡	

• (판단기준) 주차단위구획 종류 및 건축물대장 상 주차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적 판단

• 일반형(12.5m²) 기준 80면이 1,000m²이나, 확장형·장애인전용 등 주차장 여건에 맞게 주차단위구획 면적 산출 필요

1 정의 및 산정 제외기준

☑ (개요) 유효한[1] **주차구획면적 10m² 당 설비용량 1kW**의 재생e 설비 설치

1)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56조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주차구획 면적을 제외한 주차구역 면적으로, 의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차구획면적

[산정 제외기준]

→ 자주식 주차장 중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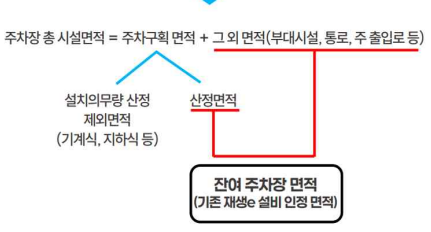
→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

→ 확장형 주차구획 중 승합자동차(중형 또는 대형)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주차면적(설치의무기관에서 승합, 특수, 화물자동차의 일상적인 주차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)

→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주차구획의 면적

2 기 설치량 인정

☑ (개요) 설치의무량 산정 시 제외한 주차구획(지하식, 기계식 등)을 제외한 잔여 주차장 면적에 **기존에 설치된 재생e 설비가 존재**하는 경우 해당 설비용량만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



(중요) 기계식, 지하식 등은 **설치의무량 산정 시에는 제외**되지만 의무대상 주차장인 **1,000m² 이상 기준을 판단할 때는 포함**됨

✓ (근거규정)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58조

① **非설치의무기관** : 주차장 부지 **소유자가 설치의무기관이 아닌 경우**에 의무이행 대상이 아니므로 의무면제
*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주차장 소유주가 설치의무기관이 아님을 확인 시 의무면제

② **노상주차장** : 도로 및 교통광장에 설치되어 재생e 설치 시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**노상주차장**은 의무면제
*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이므로 해당 사실 입증 시 본 면제기준을 적용하여 면제하며,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면제신청서 제출

③ **임시주차장** : **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설치**된 주차장으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무면제
* 개별 주차장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 '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주차장'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면제대상으로 인정

④ **국가안보·기밀시설** : **국가안보 및 기밀시설의 부설주차장**에 일반대중의 이용을 제한*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인허가 절차의 생략**이 가능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의무면제
* 건축물이 국가안보시설임에도 주차장은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경우(ex. 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나, 주차장은 대중에 개방)에는 해당기준에 따른 의무면제 신청 불가
** 부설주차장 설치 이전에 선행되는 인허가 절차(ex. 개발행위허가, 건축허가 등)에서 국가안보시설 및 기밀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 인허가 절차 혹은 서류 제출의 생략
(ex. 건축법상 국가안보 또는 기밀시설의 설계도서 제출 생략)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

⑤ **기타 사유** : **재생에너지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**로서 위원회 심의로 인정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의무 면제


노상주차장


공항주차장

이행주체

☑ **(이행주체)** 해당 주차장을 설치 혹은 운영하는 설치의무기관

→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설치의무기관이 아닌 경우(=민간)에는 해당 주차장은 의무대상이 아님(면제대상 ①)

→ 설치자와 운영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**설치자가 제도 이행절차 진행**

[이행주체별 의무화제도 대상여부 검토]

주차장 부지 소유기관	주차장 설치기관	주차장 운영기관	설치의무화 제도 대상 여부	이행주체
민간	공공 / 민간	공공 / 민간	x	비대상
공공	민간	민간	x	
	민간	**공공**	o	운영기관
	공공	공공	o	설치기관
	공공	민간	o	설치기관

제출서류

☑ **(제출서류)** 주차장의 설치 정보, 주차장 정보, 재생에너지 설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

[의무이행 시 제출서류 內 작성항목 및 증빙서류]

주요정보	설치계획서 등 의무이행서류 작성항목	증빙서류
기관	① 기관명 ② 기관유형	① 사업자등록증
주차장	① 주차장명 ② 주차장 주소 ③ 주차장 유형(노상 등) ④ 주차장 총 시설면적	①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 ②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,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 ③ 주차장 설계도면 ④ (필요시) 해당 주차장 등기부등본
설치 계획	① 설치예정 에너지원 ② 설치방식(직접, 임대) ③ 설비유형(자가용, 발전사업용) ④ 설치예정용량 ⑤ 기존설치용량 (타 의무 인정 등)	① 재생에너지 설비 예상 배치도 ② 사용전 검사 확인증 ③ 설치 현장사진 1부 ④ 태양광 발전설비 현장점검표 1부 ⑤ 발전사업허가증 1부 (자가용 발전설비는 제외)

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

- **토지대장, 건축물대장**: 주차장 소유 관계, 설치기관 및 용도구역 등 파악
- **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,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**: 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차장법 상 필수서류이나, 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별도 서류 존재(실시계획 고시, 개별법 상의 인허가 제반서류) 시 해당 서류로 제출하며, 주차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문서가 부재한 경우 주차장의 법정 주차대수에 따른 주차구획면적을 기준으로 검토
- **설치계획**: 기 시행 중인 "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*" 요구서류와 동일하며, 기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②~⑤ 서류 추가 제출

*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,000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('26년, 36%)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('~'04년)

설치 계획	① 설치예정 에너지원 ② 설치방식(직접, 입대) ③ 설비유형(자가용, 발전사업용) ④ 설치예정용량 ⑤ 기존설치용량 (타 의무 인정 등)	① 재생에너지 설비 예상 배치도 ② 사용전 검사 확인증 ③ 설치 현장사진 1부 ④ 태양광 발전설비 현장점검표 1부 ⑤ 발전사업허가증 1부 (자가용 발전설비는 제외)

(서식)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

[붙임 1] 공영주차장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(시설 제53조제1항 관련)

공영주차장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

신청구분						□ 신규				□ 변경		
신청자	상호(기관명)					사업자등록번호						
	대표자명					연락처(휴대전화)						
	주소											
	기관 유형					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□ 공공기관 □ 정부출연기관 □ 정부출자기업체 □ 정부 등 출자법인 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						
주차장 정보	주차장명					관리자				소속부서		
						연락처				E-mail		
	주차장 주소											
	주차장 유형 (노상, 노외, 부설)					주차장 전체 면적(m²)						
	주차구획 현황	구분	주차대수 (구획 수)	계획 대상 주차단위구획 총면적(m²)						기타	설치 대상 주차단위구획 총면적(m²)	
				지하	건축물	기계식	차량, 장애인 · 여성 · 임산부 전용주차					
		경형										
		일반										
		확장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설비 설치계획	에너지원			□ 태양광					□ 그 외 신 · 재생에너지원			
	설치방식			□ 직접 설치					□ 주차장 부지 임대 등을 통한 설치			
	설비유형			□전기사업용 설비					□자가발전 설비			
	신규 설치 예정 설비용량(kW)			기존 설치 설비용량(kW) * 기존 설치가 있는 경우								

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상 호(기 관 명) : (인)

신·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

※ 첨부서류
1. 사업자등록증 1부.
2. 기관 유형(지우 대상 여부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3.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4.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예상 배치도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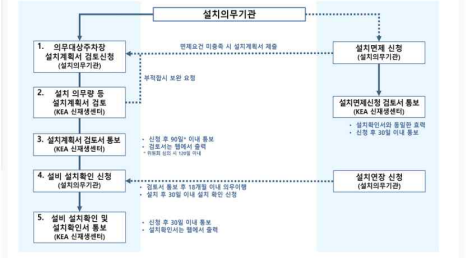
6. 이행절차

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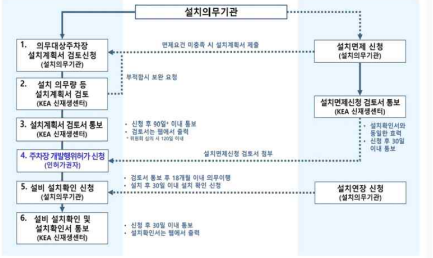
☑ **(의무 이행절차)** 의무대상 여부 확인(이행주체) → **설치계획서 제출*** **(이행주체)** → 설치계획서 검토서 통보(센터) →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(이행주체)
→ 설치확인 신청(이행주체) → 설치확인 및 설치확인서 통보(센터) *기설주차장은 '26.11.28.까지, 신설주차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

☑ **(의무 면제절차)** 의무대상 여부 확인(이행주체) → 면제신청서 제출(이행주체) → [비해당시] 설치계획서 제출(이행주체), [해당시] 면제신청 검토서 통보(센터)
(의무 면제절차) 의무대상 여부 확인(이행주체) → 면제신청서 제출(이행주체) → [비해당] 설치계획서 제출(이행주체),[해당] 면제신청 검토서

기설 주차장



신설 주차장



※ **(기설·신설주차장 판단기준)** 2025.11.28.기준 "개발행위허가 여부"(기 허가완료 기설, 허가 미완료 시 신설)

1 설치계획서 신청·검토(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, 제59조)

✓ **(신청방법)**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개설한 온라인 민원 접수 플랫폼에 **설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**

[온라인 민원접수 플랫폼]



[(서식) 설치계획서]

[붙임 1]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(서울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)

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

신청구분			□ 신규		□ 변경	
신청자	상호(기관명)	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명			연락처(휴대전화)		
	주소					
	기관 유형	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□ 공공기관 □ 정부출연기관 □ 정부출자기업체 □ 정부 및 출자법인 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				
주차장 정보	주차장명			관리자		소속부서
				연락처		E-mail
	주차장 주소					
	주차장 유형 (노상, 노외, 부설)	주차장 전체 면적(m^2)				
	주차구획 현황	구분	주차단위구획 면적(m^2)	해치 대상 주차단위구획 총면적(m^2)		설치 대상 주차단위구획 총면적(m^2)
				지하	건축물	기계식	주택, 판매시설 기계식	기타	
		경형							
		일반							
		확장							
		기타							
설치 설치계획	에너지원	□ 태양광			□ 그 외 신·재생에너지원				
	설치방식	□ 직접 설치			□ 주차장 부지 임대 등을 통한 설치				
	설비용량	□ 신기사업용 설비			□ 자가발전 설비				
	신규 설치 예정 설비용량(kW)	기존 설치 설비용량(kW) * 기존 설치가 있는 경우							

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상 호(기 관 명) : (인)

신·재생에너지설비소장 귀하

1 설치계획서 신청·검토(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, 제59조)

- ✓ **(처리기한)** 설치계획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검토서 통보
  - → 설치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기간은 90일(처리기한)에 포함X. 또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음
- ✓ **(검토방법)** 서면 또는 현장조사(필요시)
  - → (검토항목)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해당 여부,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규모, 설비 설치기준,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설치계획서 검토 기준 등
- ✓ **(설치계획 변경)** 경미한 사유 변경은 변경시 설비확인 신청 시 신고, 중대한 사유로 인한 변경 시 설치계획서 재제출
  - → (경미한 사유) 설비용량이 설치계획서 용량의 100~110% 이내로 변경
  - → (중대한 사유) 주차구획 면적 변경, 설비 설치위치, 에너지원 등의 변경
- ✓ **(후속절차)** 검토서 통보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재생e 설치 완료 필요

[(서식) 검토서]

[별지 2] 공영주차장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서 (서식 제3조제4항 관련)

공영주차장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서

| | | |

2 설치면제 신청·검토(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제2항)

- **(신청방법)**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개설한 온라인 민원 접수 플랫폼을 통해 설치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**(처리기한)** 설치면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* 이내 검토서 통보

  *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심의위원회 절차를 포함한 기간

- **(후속절차)** 면제가 불승인된 경우 설치계획서 제출 필요, 면제가 승인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시 설치면제신청 검토서*를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 요건 충족 가능

  *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요구서류인 설치계획서 검토서와 동일한 효력 보유

[(서식) 설치면제신청서]

[별지 3] 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 (시설 제34조제2항 관련)

공장주차장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

신청자	성명(기관명)		사업자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
	대표자명		연락처(휴대전화)
	주소		
	기관 유형	□ 국가, 및 지방자치단체 □ 공공기관 □ 정부출연기관 □ 정부출자기업체 □ 정부 및 출자업입 그외법인에 따라 설립된 단체	
주차장 정보	주차장명	관리자	소속부서
		연락처	E-mail
	주차장 주소		
	주차장 유형 (노상, 노외, 부설)	주차장 면적 면적(㎡)	주차면수 및 면면적(㎡)
면제 신청 내용	면제 사유	상세 내용	
	공장면적 중 주차에 필요한 주차장의 합계		
	공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 중 자체 소비가 필요한 주차장		
	공장 외 기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		
	그 밖의 사유		

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상 호 (기 관 명) : (인)

신·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

※ 첨부서류 :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
[(서식) 설치면제신청 검토서]

[별지 4] 공장주차장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 검토서 (시설 제34조제2항 관련)

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신청 검토서

신청자	성명(기관명)		사업자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
	대표자명		연락처(휴대전화)
	주소		
	기관 유형	□ 국가, 및 지방자치단체 □ 공공기관 □ 정부출연기관 □ 정부출자기업체 □ 정부 및 출자업입 그외법인에 따라 설립된 단체	
주차장 정보	주차장명	관리자	소속부서
		연락처	E-mail
	주차장 주소		
	주차장 유형 (노상, 노외, 부설)	주차장 면적 면적(㎡)	주차면수(자동면적(㎡))
면제 신청 내용	면제 사유	상세 내용	
	공장면적 중 주차에 필요한 주차장의 합계		
	공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 중 자체 소비가 필요한 주차장		
	공장 외 기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		
	그 밖의 사유		

귀 기관이 위와 같이 제출한 공장주차장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심의 결과	□면제 대상	□면제 비대상
심의 의견		

년 월 일

신·재생에너지센터소장 (인)

3 설치연장 신청·검토(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3항)

- **(신청방법)**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개설한 온라인 민원 접수 플랫폼을 **통해 신청**(향후 신청란 추가 예정)
- **(신청사유)** ①전력계통 연계 지연 ②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간 필요 ③주차장에 대한 **대부계약 체결** 및 **사용허가**를 통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지연 ④기타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  - → **(의무 이행방식)** 직접 설치 또는 재생e 설치 목적의 주차장 부지 임대
    - 민간 사업자를 통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형태로 진행 가능 (주차장이 행정재산일 경우 사용허가, 일반재산일 경우 대부계약)
- **(검토절차)** 연장 사유별 제출서류의 타당성 검토
- **(연장기간)** 설치기간 연장 신청 당 **최대 18개월 이내**

[[참고] 행정재산의 사용허가]

- 관련법령 : 「국유재산법」제30조(사용허가)
- 정의 :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
- 사용허가 범위
  - → (공용·공공용·기업용 재산)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
  - → (보존용 재산)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
- 허가기간 및 방법 : 5년 이내 / 일반경쟁입찰 실시

[[참고] 일반재산의 대부계약]

- 관련법령 : 「국유재산법」제46조(대부기간)
- 정의 :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
- 대부방법 : 일반경쟁입찰 실시

4 설치확인 신청·검토(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2항)

- **(신청방법)** 재생e 설비 설치 완료일(**사용전검사 완료일 기준**)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개설한 온라인 민원접수 플랫폼을 통해 **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**
- **(처리기한)** 설비 설치확인 신청일로부터 **30일 이내** 확인서 통보
  -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 요청하며 해당 보완기간은 검토기간(30일)에 포함되지 않음
- **(검토절차)**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진행
  - **(서면)**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가 「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지침」 [별지 제25호 서식] **"설치확인 현장점검표"**를 작성 및 시공업체의 인감날인본 제출
  - **(현장)** 재생에너지센터에서 현장방문하여 **"설치확인 현장점검표"** 작성 및 날인
- **(설치확인서 통보)** 시공기준 부적합 혹은 설치계획서의 중대사유 변경 확인 시 설치확인 신청 반려하며, 그 외의 경우 설치확인서 통보
  - 신청 반려 시, 설치계획서 재제출 필요
  - **설비확인서는 의무화제도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효력을 가짐**

[(서식)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]

[별지 5] 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(시설 제56조제2항 관련)

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

□ 신규 □ 변경

신청자	상호(기관명)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명		연락처(휴대전화)
	주소		
	기관 유형	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□ 공공기관 □ 정부출연기관 □ 정부출자기업체 □ 정부 및 정부투인 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	
주차장정보	주차장명	관리자	소속부서
		연락처	E-mail
	주차장 주소		
	주차장 유형 (노상, 노외, 부설)	주차장 전체 면적(㎡)	
	주차구획 현황	구분	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면적(㎡) / 대수 / 경형 / 일반형 / 장애인전용 / 기타 / 별도 산정 주차단위구획 총면적(㎡)
		지상	
		지하 1층	
		지하 2층	
	에너지저장	□ 태양광	□ 그 외 신·재생에너지설비
	설치방식	□ 지붕 설치	□ 주차장 주차 단위 상부 활용 설치
설비현황	입찰지원금(접수번호) (주차장 단위를 묶어 신청하는 경우 작성)	설치인 사업자등록번호	
	설비유형	□전기자동차 충전	□자기발전 설비
	설비용량(kW)	허가용량(kW) * 전기사업법 허가 기준	
	설비용량(kW)	설비용량(kW)	
	사용전검사일	사용전검사확인 증명원번호	

설치자가 대상 공장주차장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완료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상 호 (기 관 명) : (인)

신·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

첨부서류
1. 사업자등록증 1부.
2. 주차장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3. 발전설비확인증 1부(자가발전 설비는 제외).
4. 지붕설치가 확인된 1부.
5. 정비 확인증 1부.

[(서식) 설비 설치확인서]

[별지 6] 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(시설 제56조제2항 관련)

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

□ 관리번호 :

□ 사업자등록번호 :

□ 사업자 :

□ 기 관 명 :

□ 대 표 자 :

□ 설치허가 대상 공장주차장명 :

□ 설치대상 주차단위구획 총면적 :

□ 설치장소(주차장 주소) :

□ 설치현황

- 에너지저장 :
- 허가용량(kW) :
  * 전기사업용 설비의 경우
- 설치용량(kW) :

위와 설치허가 대상 공장주차장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·재생에너지센터소장 (인)

Q1 여러 건물에 주차장이 분산되어 설치된 경우, 어떤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판단하나요?

- 본 제도에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서류에 근거하여 대상 주차장을 구분합니다.
  따라서, 여러 주차장이 산재하여 있더라도 동일한 공부상 서류에 존재한다면 단일 주차장으로 인식합니다.

Q2 지하식·건축물식 등 설치의무량 산정 제외 대상 주차구획 면적에 설치된 기설치 설비는 인정되나요?

- 「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56조 제1항에 의한 설치의무량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에 설치된 설비는 의무를 이행한 용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Q3 주차구획 면적 계산 시 지하주차장, 기계식주차장, 건축물식주차장이포함되나요?

- 「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56조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지하주차장, 기계식주차장, 건물식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에는 포함되나, 설치의무량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.

Q4 설치의무량 산정시 제외되는 주차장(지하식 및 건축물식 등)만을 설치·운영 중인 경우는 설치면제가 가능한가요?

- 설치의무량이 0이더라도 '설치계획서'에 제외 대상인 주차단위구획 총면적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Q5 대상 주차장에 일조량이 부족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「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中 [별표1]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(제7조제1항 관련)의 '2. 태양광설비 시공기준'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하므로 일조량이 시공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조량 시뮬레이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한편, '일조량이 부족한 주차구획의 면적'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구획 면적에 대해 설치의무량 산정이 필요하며 설치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
Q6 조경기준(법정식재수) 등 타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수목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면적을 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?

✓ 수목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기준 상 법정 식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식 또는 벌목을 검토하여야 하며, 법정 식재수 유지로 인해 수목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자료 검토 후 의무량 산정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.
이 경우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식재계획평면도, 수량총괄집계표 등 해당 구역의 법정 식재 기준 및 식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경기준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(공문 또는 검토서)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Q7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' 이행을 위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경우, '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'를 이행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✓ 「재생에너지법」 제12조에 따른 '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'는 '건축물'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다만, 건축물에 공급의무비율 만큼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불가분을 필지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.
해당 사례에서 주차장에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"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"에서 의무를 이행한 용량으로 인정됩니다.

Q8 전력계통(변전소) 연계가 어려운 경우 이를 면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- 「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5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통 연계 지연 또는 불가 사유는 설치 면제 사유가 아닌 설치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.

Q9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 공부상 서류가 없는 경우 어떤 자료로 대체 증빙할 수 있나요?

-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의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,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(주차장대수, 면적 등 표기)을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차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계도면,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10 주차장 부지 내 화장실 등 부속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것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나요?

- 주차장 내 부대시설로서 이용되는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

THANK YOU

한국에너지공단
KOREA ENERGY AGENCY